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 
개정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  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「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 
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2010. 12. 24(금)

산업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봉희 의원 외 6인

나. 발의일자 : 2010년 11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2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2월 15일

(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충북도의 전략산업을 육성·지원하고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

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의 수정(안 제1조, 안 제2조 등)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민병완)

- '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현실에 맞게 일부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·지원하고, 과학기술진흥시책을 수립·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”를 “뜻은 다음과 같다.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, “지역”을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라 함은”을 “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전략산업을 집중육성 지원하고, 과학기술진흥시책 수립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·지원하고, 과학기술진흥시책을 수립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지역전략산업”이라 함은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 내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제 1조제 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-----이란 ----- -----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2. “지역연구개발사업”이라 함은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</p>	<p>2. -----<u>이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3. “첨단기술 및 첨단제품”이라 함은 「산업발전법」 제 50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.</p>	<p>3. -----<u>이란</u> ----- -----<u>따라</u>----- -----.</p>
<p>4. “과학관”이라 함은 「과학관 육성법」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.</p>	<p>4. -----<u>이란</u>----- ----- <u>따라</u>-----.</p>
<p>5. “연구개발과제”라 함은 지역연구개발사업 (이하 “연구개발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.</p>	<p>5. -----<u>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6. “연구기관”이라 함은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 32조제 2항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, 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을 말한다.</p>	<p>6. -----이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

제11조(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 ① 시·도지사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관할 구역의 시·군·구의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·도의 지역전략산업과 해당 광역경제권의 지역선도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1.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
2.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
3.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